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5
----------	-----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이내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조례함에 따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시민회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해야 사용료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사용예정일 1일전이라도 계약취소 신청시 사용료를 반환. (안 제10조 제3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5일전”을 “1일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②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1일전----- ----- -----